

< 2017년 FTA특례법 정정 및 개정사항 교재순 >

▶ 개정(신설) - 교재 38페이지 ★

(4) 인도

인도와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: 인도수출검사위원회, **섬유위원회(Textile Committee)** 및 **수산물수출개발원(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)**

2.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: 증명서발급기관(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). 다만,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.

해설) 인도의 기관발급기관 추가

(5) 페루 - 사문화 (법은 존재하나 이 법규를 적용하지 않음)

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: 페루 통상본부

2.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: 증명서발급기관(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). 다만,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.

해설) 한 페루 협정이 발효된 지 5년이 경과하여

원산지발급방식이 기관발급 또는 수출자의 원산지인증수출자방식에서 인증수출자가 아닌 **수출자, 생산자 자율작성방식**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법규정에서는 삭제되지 않았지만 상기 부분은 **사문화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.**

▶ 정정 - 교재 40페이지

구분	페루	칠레	EU	미국	뉴질랜드	터키	콜롬비아	호주	캐나다
발급방식	자율	자율	자율	자율	자율	자율	자율	* 기관 * 자율	자율
대한민국	자율	자율	자율	자율	자율	자율	자율	자율	자율
자율발급 발급주체	수출자 생산자	수출자	수출자	수출자 생산자 수입자	수출자 생산자	수출자	수출자 생산자	수출자 생산자	수출자 생산자

* 대한민국 증명서 발급기관 - 세관, 자유무역지역관리원, 상공회의소, 대한 상공회의소

* 둘다 적용하는 국가 - 호주

* 자율발급 주체

1. 수출자 - 터키, 칠레, EU (집터가 칠이유)
2. 수출자, 생산자, 수입자 - 미국
3. 수출자, 생산자 - 상기를 제외한 자율발급 협정국가

▶ 개정(신설) - 교재 43페이지

(9) 신청서류

상기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재발급의 경우: 재발급 신청사유서
2. 정정발급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
 - 가. 원산지증명서 원본

다만, 원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.

- 나. 정정발급 신청사유서
- 다.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▶ 개정(개정) - 교재 71페이지

2) 기재사항

이의제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①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(전자주소를 포함한다) 또는居所
- ②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
- ③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

▶ 개정(삭제) - 교재 118페이지 ★★

1 통관 절차의 특례 (법 제29조)

1. 의의

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.

2. 대상국가 및 물품

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.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

품에 대해서는 「관세법」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.

- (1)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(미화 200달러)
- (2)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(미화 100달러) - 삭제
- (3)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(미화 100달러) - 삭제

해설) 특송물품에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목록통관으로 하는 기준금액이 미화100달러에서 미화150달러로 조정됨에 따라 기존에 콜롬비아, 뉴질랜드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 미화100달러의 수입신고생략규정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삭제함.

▶ 개정(개정) - 교재 119페이지 ★★

2.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구체적인 면제대상

- (1) 수입신고의 수리일(受理日)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

1) 대상

상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·페루·미합중국·캐나다·콜롬비아·뉴질랜드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. 다만,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제6호의 물품으로 한정하고,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.

1. 언론장비,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, 소프트웨어, 방송·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,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
2.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(구성부품,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)
3. **운동경기용 물품(시범용 또는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)**
4. **상용건품**
5.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·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. 다만,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.
6.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

해설) 즉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

1. 언론장비,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, 소프트웨어, 방송·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,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
2.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(구성부품,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)
3. **운동경기용 물품(시범용 또는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)**
4. **상용건품** **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.**

▶ 정정 - 교재 159페이지

* 페루 - CO 발급방식. 발급주체 정정

♣ 협정별 종합비교

구 분	긴급관세		CO 발급방식	발급주체	서식	유효기간	검증방식
	조치기간	총기간					
싱가포르	2년 (200일)	4년	기관발급	세관	증명서식		직접
아세안	3년 (200일)	4년	기관발급	개별기관	통일서식 (AK)	발급일부터 1년 (재발급시- 당초발급일 부터12개월)	간접 → (현지조사)
인도	2년 (200일)	4년	기관발급	인도수출 검사위원회등	통일증명 서식		간접 → (현지조사)
EFTA	1년 (200일)	3년	자율발급(스 위스 치즈-기관)	수출자 / 생산자	상업서류에 문안기재		간접 (참관가능)
칠레	(120일)		자율발급	수출자	통일증명 서식	서명일부터 2년	직접
EU	2년 (200일)	4년	자율발급	수출자 (인증수출자, 6천유로이하)	상업서류에 문안기재		간접 → (참관가능)
페루	2년 (180일)	4년	자율발급	수출자 / 생산자	통일양식	발급일부터 1년 (제3국일시 보관 2년)	직간접
미국	2년 (200일)	3년	자율발급	수출자 생산자 수입자	양식없음 (권고서식)	발급일부터 4년	직접 (섬유등 - 간접)
터키	2년 (200일)	3년	자율발급	수출자	상업서류에 문안기재		간접 (참관가능)
콜롬비아	2년 (200일)	3년	자율발급	수출자 / 생산자	통일서식	서명일부터 1년	직간접
호주	2년 (200일)	3년	자율발급 기관발급 (호주)	수출자 / 생산자	양식없음 (권고서식)	발급일부터 서명일부터 2년	직(간접)
캐나다	2년 (200일)	4년	자율발급	수출자 / 생산자	표준서식	서명일부터 2년	직접
뉴질랜드	2년 (200일)	3년	자율발급	수출자 / 생산자	상업서류에 문안기재	서명일부터 2년	직접
베트남	2년 (200일)	3년	기관발급	베트남 산업무역부	표준서식	발급일 다음날부터 1년	간접 → (현지조사)
중 국	2년 (200일)	4년	기관발급	중국국제 무역촉진 위원회 등	표준서식		간접 → (현지조사)

